생물다양성 보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①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② 외래생물의 위해 정도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및 규제, ③ 생태계서비스를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1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4
1.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4
1.1.1. 생물다양성의 가치 4
2. 생물자원 보호 7
2.1.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7
2.1.1.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7
2.1.2. 생물자원 획득 신고 9
3. 외래생물 등 규제 11
3.1. 유입주의 생물 11
3.1.1.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11
3.1.2. 생태계위해성 평가 15
3.2. 생태계교란 생물 17
3.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17
3.2.2.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19
3.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4
3.3.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24
3.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29
3.4.1.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29
4.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32
4.1.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32
4.1.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32
4.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34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1.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1.1.1.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생물다양성"이란?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생물자원"이란?

▪ 생물자원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 전 지구적인 극한기후 증가로, 대기·해양·육지 전반에서 대규모 생물 이동·폐사 등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 발생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73% 감소하였고,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기말까지 현재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지구 생물다양성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6`~`30), (2025. 12), 13쪽 참조].

▪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 왔고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며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 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육종가나 농부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 유전적 다양성을 이용하여 왔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 생물다양성의 유지가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세대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농작물, 자원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100쪽 참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지구의 생물자원은 인류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핵심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전 세계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종의 소멸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국가별 노력은 물론 지역적, 전 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88쪽 참고].

▪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아젠다 21의 기본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간주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혹은 그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이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소개 –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개요 참조].

▪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그 관할지역 내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90쪽 참고].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지정

▪ 유엔(UN)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을 위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https://www.cbd.int/idb/).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및 희귀 생물종 지정 및 보호

▪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희귀한 생물들을 각각 보호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37쪽].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대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상 해양생물	천연기념물 (동물, 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관련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관리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2급) 267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77종	천연기념물 70종	희귀식물 571종, 특산식물 360종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72쪽 참조>

외래생물의 확산에 따른 규제

▪ 세계적으로 국가 간 교역과 왕래가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외래생물이 들어와 토착종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원래의 생태계가 바뀌고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함께 외래생물의 확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62쪽].

▹ 우리나라는 개항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76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국내에 유입된 생물을 외래생물로 관리중입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62쪽].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떨어뜨리는 침입외래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황소개구리, 돼지풀 등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향후 유입돼 피해를 줄 수 있는 외래생물을 지정해 유입을 차단하거나 확산을 막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62쪽].

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특정도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 생태자원DB 참조].

Q.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②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③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④ 야생동물의 개인 사육은 지양합니다.

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합니다.

⑥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⑦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밀렵·밀수품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me.go.kr) – 알림·홍보 – 홍보자료 그림자료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법 참조 (2023. 5.) >

※ 이하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자원 보호와 외래생물의 규제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생물자원 보호

2.1. 생물자원 국외반출 및 획득 신고

2.1.1.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자원은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동물	기타 무척추동물	식물	해초류	고등균류	지의류	총계(종)
82	2,073	417	435	754	1,083	344	573	10	5,771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우리나라 생물자원DB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생물자원D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 시 승인 신청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신청인이 위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국외반출 승인 제외 사유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위의 승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이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벌칙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받은 후에도 일정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취소 통지

▪ 국외반출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반납

▪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청문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생물자원 환수 명령

▪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Q.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
>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0% 이상이 원천소재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70쪽 참고 >
>
> ※ 국립 생물자원관(https://www.nibr.go.kr/)에 방문하시면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생물자원 획득 신고

▪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함)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서식).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합니다[「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2조].

> ※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 획득신고 제외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3. 외래생물 등 규제

3.1. 유입주의 생물

3.1.1.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 용어 비교

- 생태계교란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 외래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Q. 유입주의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국내에 이미 유입된 종으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거나 우려되는 종을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반면 유입주의 생물은 미유입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생물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을 도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미관리 대상종으로 재분류됩니다.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2023), 42쪽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발간'(2023. 1. 31.) 참조].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종 명	푸른꽃나팔꽃 (*Ipomoea indica*)	붉은꽁지직박구리 (*Pycnonotus cafer*)
사 진		
지 정 사 유	- 토착종과 경쟁 및 잡종 가능성 - 타감작용	- IUCN지정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 - 토착종과 경쟁 및 농작물 피해 유발
지 정 국 가	중국,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IUCN,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종

종 명	열대긴수염개미 (*Paratrechina longicornis*)	큰물달맞이꽃 (*Ludwigia grandiflora*)
사 진		
지 정 사 유	- 마다가스카르에서 토착종과 경쟁 - 미국에서 해충으로 관리 중	- 프랑스에서 수로에 군집 형성하여 항해 방해 및 관개·배수시설에 악영향
지 정 국 가	스페인, 뉴질랜드, 미국	일본,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호주

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종 명	붉은가슴블루길 (*Lepomis auritus*)	타타리아왕고들빼기 (*Lactuca tatarica*)
사 진		
지 정 사 유	- 생태계교란 생물인 블루길의 유사종이며, 교잡 가능 - 토착종 포식	- 생태계교란 생물인 가시상추와 같은 속 - 국내 자생 고들빼기속과 교잡 가능 - 독성이 있어 식용시 위험
지 정 국 가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뉴질랜드, 중국, 미국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종 명	별도꼬마리 (*Acanthospermum australe*)	유럽독미나리 (*Aethusa cynapium*)
사 진	 © 2016. Paul vente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지 정 사 유	-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이나, 서식 기후 범위가 넓어 국내 서식 가능	- 원산지가 유럽 온대기후대이며, 국내 기후와 유사 - 원예식물 수입시 혼입 가능
지 정 국 가	중국	미국

⑤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종 명	작은목도리과일박쥐 (*Myonycteris torquata*)	열대불개미 (*Solenopsis geminata*)
사 진	 © 2010. Natalie Weber, CC BY-NC 4.0, via inaturalist.org.	
지 정 사 유	- 진드기의 숙주이며, 에볼라 바이러스 전파 가능	- 독침으로 사람·가축에 부상을 입히며, 과민성 쇼크 유발 가능 - 관개수로, 전깃줄 등 도시시설물 피해 유발
지 정 국 가	-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 유입주의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합니다(「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1호).

▹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

▪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은 총 1005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유입주의 생물이란? 참조 >

Q. 어떠한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나요?

A.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높고 피해 사례가 있거나 국내에 정착 가능성이 있어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 우선적으로 지정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2024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Ⅳ』, 41쪽>

Q.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유입주의 생물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또는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 유입주의 생물을 포함한 법정관리종 및 외래생물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2024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IV』, 41쪽 참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서 발급

▪ 신청인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Q.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면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나요?

A.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은 국내로의 자유로운 수입·반입이 제한되며, 지방(유역)환경청에 유입주의 수입·반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생태계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종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미관리 대상종으로 재분류된 뒤 해당 관리에 따라 수입·반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2024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50종 IV』, 41쪽>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및 반입 금지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의 취소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승인서 반납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3.1.2. 생태계위해성 평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입·반입하려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함)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함)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 위해성평가의 방법

위해성평가의 기준

▪ 국립생태원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 Q. 유입주의 생물을 최초 수입할 경우 위해성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
> A.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로 새로 지정'(2020. 4. 13.), 3쪽 참조 >

위해성평가의 결과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위해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및 제11조제2항).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

▪ 위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 전단).

3.2. 생태계교란 생물

3.2.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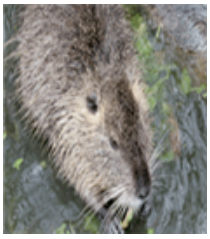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합니다[「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 포유류, 양서류·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	특징
 뉴트리아	▪ 뉴트리아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우리나라에는 1985년 모피와 식용으로 수입됨 ▪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 등으로 사육 포기 농가 발생,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자연생태계로 유출·정착 ▪ 뉴트리아의 서식지는 과거 뉴트리아 사육이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및 한강수계(남한강 지역), 제주 지역 등에서 서식개체가 확인됨 ▪ 특히, 생태계보전지역이며 람사르 습지로 널리 알려진 창녕 우포늪에 뉴트리아가 서식함 ▪ 뉴트리아는 천적이 거의 없어 우포늪의 수생식물과 희귀식물을 먹고, 주변 농업지역의 작물에도 피해를 줌
 가시박	▪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일년생 덩굴식물 ▪ 수목을 뒤덮고 자라는 생태특성으로 우리나라 자생 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여 성장을 저해함 ▪ 개체당 수천 개의 종자가 열리며, 종자에 가시가 많아 제거에 많은 노력이 필요

▪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 국내 피해사례

- 파랑볼우럭(블루길) 및 큰입배스(배스)



· 파랑볼우럭(블루길)과 큰입배스(배스)는 자원조성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분포

① 국내의 자연생태계에서 번식력과 적응력이 강하여 분포역과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

② 뛰어난 식성으로 토착어종과의 서식지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하천과 호소 내 생태계를 교란. 특히 큰입배스(배스)는 공격력이 강한 육식성 어종으로 국내의 토착어종과 새우류 등을 섭식하므로 토착어종의 감소를 초래

③ 고유어종을 희소종으로 전락시키거나 소멸시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

- 황소개구리



· 국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식을 통한 소득 증대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국내 도입된 황소개구리가 자연하천에 방치된 이후 지금까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 황소개구리는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이들에 의한 생태계 훼손, 양식장 피해 등이 심각

① 고유 하천생물의 포식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② 우리나라 고유 양서류 중에서 개구리과의 종들과 경쟁하여 우세하므로 고유종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처 잠식

③ 토종 어류의 포식자로 어류자원의 다양성 감소 초래

- 붉은귀거북



· 붉은귀거북은 우리나라에 1980년대 후반에 애완용과 종교적인 방생의 목적으로 수입되어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붉은귀거북으로 인한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보고됨

① 국내에 천적이 없고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으로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 먹이사슬을 서서히 잠식

② 붉은귀거북은 내성이 강하여 3~4급수의 수질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분포력이 강함

③ 우리나라 고유의 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을 포식하여 고유종의 개체수 및 어류자원의 감소 유발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교란 생물 – 피해사례 참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해제 및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3.2.2.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예외적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 수송계획서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 수입 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 수입 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등 허가서 발급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등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나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호).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에만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

-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5).

  -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위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별지 제9호의7서식).

  -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 허가서 발급

▪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출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당시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었던 자가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별지 제9호의9서식,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2조제1항).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재배 이행계획서

-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
  - √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 √ 시설의 규모 및 구조
  - √ 시설 평면도 및 사진
-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그 밖에 사육·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 발급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신청을 허가받은 신청인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 및 별지 제9호의10서식).

위반 시 제재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호).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라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 Q. 제가 키우고 싶은 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을 집에서 키울 수 있나요?
>
> A.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유예기간(6개월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6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

▪ 생태계교란 생물의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 생태계교란 생물의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서 반납

▪ 생태계교란 생물 ① 수입등, ② 방출등 또는 ③ 사육·재배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8서식, 별지 제9호의10서식).

몰수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호).

포획·채취 명령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는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3.3.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합니다(「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표).

▹ 포유류, 어류, 양서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 현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총 5종입니다.

구분	생태계위해우려 지정생물	
포유류	라쿤	
어류	대서양연어	피라냐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곤충류	노랑알락하늘소	

※ 고유종과 외래종 구별요령

구분	라쿤(외래종)	너구리(고유종)
지정 현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특징	라쿤의 귀는 비교적 크고 흰 테두리가 있음. 차량의 전조등에 비출 때 라쿤의 다리는 하얗게 보이며, 걸을 때 발바닥 전부 땅에 닿도록 걸음.	너구리의 귀는 둥글고 양 귀 사이가 비교적 좁음. 가슴에서 등까지에 걸쳐 흰 무늬가 있고, 차량의 전조등에 비출 때 너구리의 다리는 검게 보이며, 걸을 때 발끝만 땅에 닿도록 걸음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구별요령 참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상업적 목적의 수입등의 허가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 수송계획서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또한, 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신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및 별지 제9호의4서식).

- 사용계획서
-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
- 수송계획서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 및 별지 제9호의5서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호).

▪ 위 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변경신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4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7호의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별지 제9호의6서식).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

▪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수입등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4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다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본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요건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등을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 신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7호의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및 별지 제9호의7서식).

-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 발급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출등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의2 및 제16조제1항제9호).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취소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부가된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서 반납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및 방출등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방출등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몰수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은 몰수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호).

포획·채취 명령

-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3.4.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3.4.1.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외래생물을 반려생물로 키우려고 수입·구입할 때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를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외래생물 – 외래생물이란? 참조].

Q. 외래생물은 모두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정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래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종	
유입주의 생물	수입 전 지방청장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고 그 외 목적의 수입 전 지방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학술연구, 전시, 교육 등 목적의 예외적 상황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 전 지방청장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2020), 6쪽 참조 >

법정관리 외래생물 확인방법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방문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 의심 외래생물은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주세요.

위해 의심 외래생물 신고

▪ 국가 간 무역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과 정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활주변의 야외나 수입품 등의 구입물품 등에서 ´위해 의심 외래생물´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및 절차

▪ 신고대상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과 같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물입니다.

순서	신고절차	
1	위해 외래생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2	사진 촬영 및 위치 기록	
3	신고하기	√ 외래생물 신고센터 게시판이나 전화,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고 유선전화: 041-950-5407 무선전화: 010-5744-5407 이메일: kias@nie.re.kr
4	담당자 확인 및 회신	√ 전화, 이메일: 신고 방법(전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회신 √ 신고센터 게시판: 게시판 답글을 통해 회신

<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http://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신고센터 소개 참조>

4.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4.1. 생태계서비스 보호에 따른 보상

4.1.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태계서비스를 보전 또는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란?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 즉,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3쪽 참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참조).

1.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2.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
3.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5. 야생생물 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의 지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8. 협약등록습지(「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

9.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

10.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11.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의 체결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기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을 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2)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관리 등 수질의 개선

3) 저류지의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1) 경관숲·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개선

2)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의 조성·관리

3)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5)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계약의 해지방법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Q.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A. 관할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행 점검을 통해 계약의 미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금 환수 또는 감액 지급, 차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본격 추진'(2021. 1. 8.), 9쪽 >

4.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활동유형 예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10쪽 참고].

서비스 유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	세부 활동유형

환경 조절 서비스	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1.	식생 군락 조성·관리	01.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나.	수질 개선	1.	하천관리	02.	하천 환경 정화
			2.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03.	수변식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재해 방지	1.	저류지 조성·관리	04.	저류지 조성·관리
			2.	토양 침식 방지	05.	나대지 녹화·관리
문화 서비스	가.	자연경관 개선	1.	경관숲 조성·관리	06.	경관숲 조성·관리
			2.	산책로 조성·관리	07.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나.	자연경관 조성	1.	조망점/축 조성·관리	08.	자연경관 전망대 조성·관리
	다.	자연자산 유지·관리	1.	자연자산 유지·관리	09.	생태계 보전 관리 활동
지지 서비스	가.	경작지	1.	친환경적 경작	10.	휴경
					11.	친환경 작물 경작
			2.	야생동물 먹이 제공	12.	벼 등 미수확
					13.	쉼터 조성 관리
					14.	볏짚 존치
					15.	보리・율무 등 재배
	나.	야생생물 서식지	1.	생태계 조성·관리	16.	숲(지역 자생수종) 조성·관리
					17.	습지 조성·관리
					18.	생태 웅덩이 조성·관리
					19.	관목 덤불 조성·관리
					20.	초지 조성·관리
					21.	생태계 교란종 제거
			2.	생물종 서식지 조성·관리	22.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10쪽>

환경조절서비스 활동 예시

환경조절 서비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 식생군락 조성·관리
분류 및 세부활동명	환경조절-가-1-1. 기후변화대응 숲 조성·관리
신청 대상지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발전소, 산업단지, 도로 등이 인접하여 미세먼지 외 각종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등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활동내용	√ 조성방법 수종 선정 시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의 생태기반환경과 주변 식생 고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목적을 위한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효과적 2. 잎의 구조(표면구조 등) 및 형태적 특성이 복잡하고, 단위면적당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높은 수종 3. 물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잎을 가지며, 수고가 높고, 생장속도가 빠른 수종 4. 수관 밀도가 높고, 가지나 잎이 잘 밀생하는 수종 5. 꽃가루 알러지와 BVOC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적은 수종 √ 이산화탄소 흡수 수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현재 탄소흡수량이 입증된 대나무, 소나무, 참나무류 위주 선정 필요 2. 대나무 한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5.4kg으로 알려짐 대나무의 확산 속도가 비교적 빠르므로 다른 수종의 피압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나무 식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재대상지 기후대도 고려해야 함
기대효과	√ 소나무 30년생 1주는 매년 6.6kg, 30년생으로 1ha의 숲 조성 시 매년 10.8톤의 CO2 흡수 가능 √ 대나무 숲 1ha(6,200본)에서 연간 33.5톤의 CO2 흡수 가능 √ 1ha 숲 조성 시 대기오염물질 흡수량은 총 168kg (미세먼지(PM10)46kg, 이산화황(SO2)24kg, 이산화질소(NO2)52kg, 오존(O3)46kg 등)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기여
활동검증	소요경비 영수증 제출, 현장 활동 전·후 사진 제출

지급단가	√ 조성비 : 25,6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 (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적용
모니터링 방법	√ 기후변화대응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대기질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대기검사 방법 : 지역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민간업체 의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58~59쪽>

문화서비스 활동 예시

문화서비스	자연경관 개선 – 경관숲 조성·관리
분류 및 세부활동명	문화-가-1-6. 경관숲 조성·관리
신청 대상지	√ 경관숲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 밭, 임야 해당지역의 주요지점에 위치하여 경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공용공간에 인접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활동내용	√ 경관숲 조성 면적은 10m x 10m이상, 수목(교목)의 크기는 R10 이하 선정 꽃피는 식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 선정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지역 자생수종을 선정 생태적 경관을 위해 다층 식재 실시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단일종의 군락형성이 가능한 수종 식재 (ex: 대나무) 다층식재 적용시 식재수종간 경관적, 생태적 이질감이 없도록 함 √ 경관숲 관리 경관숲 조성 후 고사되는 식재종이 없도록 관리 주변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관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적 방제 및 관리는 배제
기대효과	√ 경관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지역 주민의 휴식과 여가선용 공간 및 환경교육 공간 제공이 가능함
지급단가	√ 조성비 : 98,000원 / ㎡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10% 산정 √ 유지관리비 : 조성 후 2년간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인건비는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적용
모니터링 방법	√ 경관숲 조성・관리 사진 및 활동일지 √ 지자체 현지점검 √ 정책 및 주민만족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65쪽>

지지서비스 활동 예시

지지서비스	경작지 – 친환경적 경작
분류 및 세부활동명	지지-가-1-10. 휴경
신청 대상지	논, 밭 등의 경작지
활동내용	√ 휴경 경작활동을 하지 않음. 단, 지력 향상과 토양물리성 개선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는 가능함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하여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로 행위를 중지하는 사업도 휴경 활동에 포함 √ 휴경지 관리 : 휴경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경지 황폐화로 농지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경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 이웃 농지와의 구분을 위한 경계 설치 풀베기 및 잡초 제거, 주기적 경운 작업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담수관리 녹비작물의 재배 등 √ 휴경기간 논과 밭의 휴경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최대 3년까지 휴경이 가능함. 단, 3년 휴경 후 친환경 작물 경작이 이루어져야 함
기대효과	√ 토양의 지력 및 비옥도 증진을 통한 토양의 건강성 회복 √ 단일 작물의 지속적 경작으로 축적된 토양 독성의 완화 √ 잡초발생 억제 효과
지급단가	√ 계약면적 x 면적당 단가 면적당 단가 : 농축산물의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소득 자료를 참조, 전국 소득자료 없을 경우 지역 판매가격 참조 ※ 휴경지 관리활동비는 손실보상비에서 충당하고, 녹비작물 재배시에는 초지조성·관리 활동비용(16,300/㎡)을 기준으로 산정
모니터링 방법	√ 휴경지 관리 활동내역(풀베기, 잡초제거, 녹비작물 재배 등) √ 모니터링 방법 : 활동일지 작성 및 지자체 현지점검 √ 토양화학성 개선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 토양화학성 검사 방법 : 지역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의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74쪽>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을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